

제41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7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상정된 안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1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구)방송법 시행령에서 수신료를 결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 같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도록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EBS,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등 통합징수 찬성 의견은 수신료를 통합징수를 하는 경우 수신료 징수 비용, 수신료 납부율 측면, 납부 편의성 및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신료 징수 방식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률로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방통위와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분리징수 도입을 준비해 온 KBS와 한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분리납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KBS의 의견은 14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대로 의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합징수는 하되 다른 수신료의 징수 방법은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3항 단서에서의 협의라는 용어는 합의와 달리 법률상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의사결정 전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협의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자가 협의한 내용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14쪽 비교의 줄 쳐진 부분과 같이 ‘다만 공사는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방송법 시행령은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분리납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고 공법상의 의무인 수신료와 사법상의 의무인 전기요금은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보면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지금 분리징수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시행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민수 위원** 7월부터 돼서,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가정에서 분리돼 가지고 고지서를 받아 보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징수원이 가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좀 아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일반 가정은 지금 분리돼서 다 고지가 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합쳐서 아파트 관리비 영수할 때 같이 이렇게……

○**한민수 위원** 아니, 아파트 관리 그거야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예전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똑같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아파트 가가호호 관리사무소가 방문을 해 가지고 'KBS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이걸 확인을 했습니까? KBS가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민수 위원** 그러면 그건 달라졌다고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파트 전체 같이 할 때는.

그러면 나머지 단독주택이랄지 이런 주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단독주택이나 일반용은 분리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한다는 거는 별도로 그걸 KBS 측에서 다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한전에서 분리해서……

○**한민수 위원** 한전에서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한민수 위원** 한전에서 그렇게 분리했으니까 한전에서 되고 있다? 그 결과가 예전과 비교된 수치가 좀 나왔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지금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90.1%까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예전에 통합징수할 때 비교해까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비교할 때보다는 좀 떨어진 것은 맞는데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8월 달에 85.6%고 9월 달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89.8%. 그리고 10월 달에는 90.1%로 이렇게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민수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에 직무대행 얘기한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일괄적으로 지금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징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면. 그냥 관리비에 모두 넣는다는 거는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똑같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달라진 게 없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한민수 위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또 질의하실, 말씀하실 위원님들?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앞에 수석전문위원이나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겨우 반년도 안 됐는데 다시 바꾼다는 게 조금 약간, 이건 너무 조변석개 아니냐,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하고 신뢰가 이렇게 되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역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히 반대합니다.

○이상휘 위원 혹시 지금 방통위 직무대행께서는 짧은 층들이 TV수상기로 시청하는 그 시간이 몇 분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위원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설에 의하고 뉴스 보도 등에 의하면 10분이 안 넘어간다 그래요, TV수상기가. 그래서 TV 드라마라든가 쇼를 본다든가 뉴스를 본다는 것이 TV수상기로 보지 않는 것이고 거의 핸드폰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미 트렌드가 TV수상기 시대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도 TV, KBS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 확보 이런 건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서 김장겸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단 말이에요. 7월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결합징수로 회귀해야 되겠다 이런 법안인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채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이 부분을 시행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그런 논쟁이 있어 왔던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도 다 거쳐 왔고 그런 진통 끝에서 이것이 시행돼 왔기 때문에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우리가 좀 더 보고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KBS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수신료에 의존해 왔던 그런 재정적 구조, 이 구조가 이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현안질의에서도 봤습니다마는 KBS가 예를 들어서 자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또 다른 수익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또 제도적으로 협조할 것에 협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KBS가 공영방송으로 갈 수 있는, 재정적인 자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다시 이 것이 회귀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모양을 좀 저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보류시키고 우리가 좀 더 충분한 숙의를 하고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훈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훈기 위원 수신료 문제는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이 돼 왔는데……

지금 분리징수 시행하고 저번에 두 가지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분리징수 인원이 기자, PD, 엔지니어 포함해서 200명이 지금 안 하던 분리징수 업무에 붙어 갖고 인건비로 치면 수백억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8월 시행부터 해서 미징수금이 8월에는 80억 그다음에 60억, 65억 이 정도 돼요. 그리고 과거를 비교하면 미징수금이 매달 한 10억~20억 수준인데 보통 한 40억에서 50억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1년으로 치면 500억~1000억 이 정도 될 텐데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방송사에서 이 정도 적자를 500억, 1000억 적자 낸다는 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원회에서는 그냥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지해야 된다?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KBS의 재정건전성이나 KBS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방통위원회에서는 시행했으니까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방통위 입장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글쎄요, 무책임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좀 전의 방식인 통합징수 방식은 딱히 수상기가 없거나 실제 그 용역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실상 납부를 강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불편들이 많이 있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면서 분리징수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국민 제안을 통해서 현출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의 효과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것 2개를 국민들에게 의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강제하는 것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서 봐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들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고민해야지 징수율을 높이고 재정적인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다소 맞지 않거나 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거를 시행령을 갖고 적용을 약간 꼼수로 했다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은 대안이 없으면서……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기를 하시면……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를 법을 통해서 바로잡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동의했다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과정에서 왜곡됐다고 많이 지적을 받아 왔고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잡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KBS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건데 방통위는 제가 보기에도 좀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속 얘기하자면 너무 무책임해요. KBS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재정적인 건 다시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거는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앞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2024년도 고지액이 6919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되는 것이 한 6497억 정도 되어서 한 400억 조금 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게 언제라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24년도예요.

○소위원장 김현 24년도 11월 기준으로 5300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측치로 그렇게, 지금 85%에서 89%, 89.8%.....

○소위원장 김현 아니에요. 저기 김성환 과장.....

○이훈기 위원 그런데 그게 8월부터 시행해서 그런 거니까 1년으로 치면 거의 100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거지요. 방송사에서 1000억 적자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소위원장 김현 지금.....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지금 말씀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이 분리징수를 왜 시작했는가라는 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70% 가까우신 분들이 분리징수를 찬성하셨고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삼십대 젊은 층들에게서는 TV를 더 안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4년이 다 지나가고 2025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리징수 때문에 아주 낙후한 방법으로 수신료를 걷으려 사람들이 나간다 이런 것은 2025년, 2024년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보다 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개선할 문제라고 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결합징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좀 더 안정화돼 가는 걸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기존에 결합징수할 때 한 달에 12억 원 정도씩 초과징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달 초에 감사원의 환수 조치에 대해서 KBS가 취하소송을 한 것이 각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진짜 분리징수라는 것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20년 가까이 돼 갖고 결정된 문제인데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부작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이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의 수납률을 보면 실제로 초반에 시행되기 전에 98.9%였다가 10월에 90.1%군요.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수납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일단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본자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리징수로 인한 징수 비용의 증가 부분이 여기 자료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수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최소 10~20%p 이상 떨어지는 수납률의 결과와 함께 분리징수로 인한 징수 비용 또 KBS의 직원들이 징수 업무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켜보면서 그대로

분리징수를 하자고 하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분리징수로 인한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현재는 10%p밖에 줄지 않지만 예상컨대 분리징수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기 이전에 다시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요.

TV 시청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TV, 특히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수상기를 통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분리징수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과정 자체를, 시청 패턴의 변화와 우리 국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KBS의 돈줄을 막음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KBS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저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KBS의 기존 사장을 교체하고 KBS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게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박민 사장에 이어서 박장범 앵커의 사장 임용도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뜻에 따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악할 만큼 장악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KBS 분리징수로 인한 역할과 효과는 충분히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징수로 인한 징수 업무의 비용이 과다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KBS의 고급인력들이 투입되는 걸로 인한 인력 낭비 그리고 혼란 가중, 현재는 10%p밖에 되지 않지만 징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들을 시뮬레이션해 봐서 많이 떨어진다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분부터 하시고 또 추가로 하세요.

○노종면 위원 우리가 솔직해지면 답은 뺀합니다. 이게 수십 년 된 얘기라고 여야 위원님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 얘기가 나오냐? KBS가 마음에 안 들 때, 정치권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때 KBS를 옥죄는 수단으로 얘기해 왔어요.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이걸 마치 무슨 방법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하면 계속 답이 안 나오다 결국 표결로 가겠지요.

KBS를 옥죄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못 했다가 이번에는 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납률이 높은 게 정책 목표입니까, 낮은 게 정책 목표입니까? 조금 전에 직무대행께서 다행히도 퍼센티지가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떨어져도 문제, 올라와도 문제예요. 완전히 모순 상황이에요. 떨어지면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는 그걸 원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서 100%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분리징수하는 거지요? 뭐 하러, 누구의 실익을 위해서? 걷는 한전, KBS도 문제고 내는 국민도 불편하고…… 여기 맹점이 또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아파트에 살면 옛날하고 다른 게 없고 단독에 살면 불편해졌고 이런 모순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수신료가 최대 그거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방법을 얘기하면 납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요. 시청자의 선택권이요? 시청률, 지금 KBS 공영방송 보는 사람 없어서,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시대의 추세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수신료를 낮추거나 없애자고 하는 게 맞지요. 왜 수신료 징수 방법 갖고 그럽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KBS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해 봤는데 지금 이게 문제인 거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돌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방통위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상기 보유자는 수신료 납부의 의무를 가지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해민 위원** 모든 수상기 보유자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모든 수상기 보유자, 보유자일 수도 있고 가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가구가 됩니까?

그거 찾고 계시는 동안에, 모든 수상기 보유자는 수신료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면 그중에서 현재 징수율이 90.1%입니까? 맞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전체 TV 등록 대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주로 90.1%의 징수율을 이번에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90.1%는 10월 달 겁니다.

○**이해민 위원** 10월 달 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이해민 위원** 모든 수상기 보유자가 수신료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고 한다면, 의무라면 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법안에는 찬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무를 부과한다면 100%를 견을 수 있게 내는 사람에게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감에 있어서 몇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합집합을 하면 100%가 되면 맞는 거지요? 뭐가 됐든 목적 달성을 하는 거지요? 맞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현** 김성환 과장이 답해 보세요, 실무 책임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환** 어쨌든 부과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과한 금액에 맞게 징수가 되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이해민 위원이 얘기한 게 맞다는 얘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환** 예, KBS가 만약에 100억을 부과했으면 그 100억이 납부가 되는 게 본래……

○소위원장 김현 방식을 구하는 게 맞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래서 목적은 지금 100%를 만드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런데 이게……

○이해민 위원 잠깐만, 제가 끝내 볼게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알아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해서 여쭤보는데, 의무를 부과했다면 목적은 100%를 걷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방법이 예를 들어 세 가지다, 네 가지다…… 합집합이 100이 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냅니다.

다만 방통위가 현재 합집합이 100이 되었을 때, 옵션이 이제는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옵션 2개를 사용자한테 준다고 했을 때 한전 통합에도 2500원이 찍혀 나올 수 있고—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알려 주세요—분리로 따로 2500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통합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이체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분리가 돼서 나오는 부분은 2500원을 내가 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으신 거지요?

이게 110%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으로 가는 노력과 함께 110이 되지 않아야 되는 방법 또한 있어야 되는데 110이 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나 아니면 KBS나 방통위의 능력들은 있으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지금 세대수가 100이 있으면 세대수 100 중에서 실제 수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현 알았습니다. 그건 이 얘기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러니까 그 세대수하고 수상기 수를 같이 100으로 두면, 그렇게 되면……

○이해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합쳐지면 더 복잡해져요.

○소위원장 김현 직무대행님,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그 답이 아닌 거예요.

이상휘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상휘 위원 우선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 과제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출발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이미 30년간 TV 수신료 문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징수가 돼 왔고 또 예전부터 분리징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도 97% 정도가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2011년도인가요, 민주당에서도 분리징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들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상휘 위원님, 근거를 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충권 위원님은 여론이 70% 나왔다 그러고 이상휘 위원님은 97%인데 그 97%의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여론조사상.

○이상휘 위원 제가 2011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민주당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분리징수에 대한 부분들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봅니다. 이걸 꼭 정치적으로…… 역설적으로 얘기

하자고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해 7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분리징수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야기돼 왔던 게, 이게 준조세라는 형태로 부담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반양론이 침예하게 대립돼 왔던 거고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시행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결합징수에 대해서, 이걸 준조세 형태로 다시 국민들한테 이야기한다? 과연 이 어려운 판에 그 준조세에 대해 받았을 때 국민들의 인식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방법을 바꿀 필요가 됐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러 다니는 인력에 대한 고용 그다음에 또 거기에 파생되는 비용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들의 실효성을 판단하자면 정책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1년 단위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징수할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그때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측정치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질의응답을 했는데, 보면 우리 전체 가구수까지 제가 정확히 통계를 못 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합징수 때나 지금 분리징수나 똑같은 방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8·9·10월의 실제 징수율을 보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수치를 믿는다고 해도 80%에서 잠깐 90.1까지 올라왔는데 이후 11월, 12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년 단위로 본다면 한 방송사에서 그 정도의 적자를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명 법적 안정성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보다는 실제 실익을 따지고 첫째 공영방송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공영방송의 재원이 안정화되고 해야 보다 더 충실한 시청자들에, 국민에 대한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EBS 입장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BS에서도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통합징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이 논의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출속적으로 이뤄졌다, 근거로 내세웠던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게시판에 있는 의견인데 그 수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KBS, EBS가 공적 기능,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합징수로 빨리 환원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노종면 위원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공영방송, 세계적인 추세는 과연 공영방송이 지금 더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파의 희소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연 재난방송 외에 공영방송이 필요할까 그리고 공영방송의 내용이 진짜 공영일까 그리고 민영방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향해서 세계 추세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지배적으로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흐름으로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짚은 층은 왜 우리는 BBC를 안 보는데 BBC 수신료를 내야 될까 하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행령을 법으로 바꿔서 대못을 박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공영성보다는 노영성이 강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봤듯이 KBS 인력구조는 역피라미드 중의 역피라미드입니다. 안의 쇄신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징수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분리징수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요즘 이 시대에 자기들이 무슨 직접 찾아가고, 박충권 위원님 지적했듯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나 EBS 안의 쇄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은 줄이면서 철밥통을 보장해서,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공영방송이 편성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혹은 뭐 광고를 안 합니까, 뭐를 안 합니까? 다른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그 안의 내부 쇄신 노력을,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나 내부 노력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난 7월에 겨우 시행된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 위원님들 한 순배 돌아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규 직대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방통위 설립 이래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방통위에서 수신료…… 이 제도 자체가 제안된 것은 국민 제안을 통해서 제안이 됐던 걸로……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심의 의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용산에서 제안되기 전에 방통위 차원에서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없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저는……

○**소위원장 김현**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2008년도에 방통위 설립 이래 5기 까지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간헐적으로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방통위의 입장은 통합징수가 합리적이고 실효적이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공식 입장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갑자기 용산에서 국민제안위원회라는 형식을 띠고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 6만 8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60% 가까운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했냐면 수신료 폐지였어요. 그리고 분리징수는 38%예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았던 거지 분리징수가 높았다라는 건 왜곡이고 가짜뉴스예요. 그리고 분리징수를 하라고 하는 그 권고에는 뭐가 있느냐면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가 부대조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또 오늘 이 논의가 있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박장범 사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텔레비전 수신료와 관련해서 통합징수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합징수가 KBS 텔레비전 수신료, 즉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통합징수가 맞다는 데 구노조와 본부노조 할 것 없이 다 찬성했고 인사청문회에서 박장범 앵커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제기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해야 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방송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방송의 공익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역행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불법이다, 위법이다가 아니라 방송 재원 마련에 심각한 침해를 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KBS의 심판청구를. 그래서 분리징수 방식이 재원 마련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각한 거지만 그 이전에 현재는 통합징수 방식이 맞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99년도, 2003년도 2월 달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판결이 법령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번에는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있는 겁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통합징수법안을 낸 이유는 500억이라는 돈이 올해 덜 걷혀요, 500억. 내년에 더 피해가 심각할 수 있어요, 복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하기 전에 복원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텔레비전 수신료 500억 징수 덜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KBS가 안정적으로 안 됨으로 인해서 방발기금의 손실이 막대하다, EBS와 KBS. 그 여파로 지상파방송 중에 지역방송, 종교방송, 중소방송의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이 전무했다, 되게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부터 논의해야지만 앞서 여당 위원들이 얘기하는, 6개월 후 시행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21대 논의가 중단된 수신료산정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당시 야당,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회계분리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신료 안정화 문제가 가장 급선무예요. 수신료를 분리하나 징수하나 이런 방식을 둘러싸고 재원구조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 논의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에서 논의하던 내용 중에 멈춰선 것, 수신료산정위원회를

국회에 들 거냐 아니면 방통위에 들 거냐 아니면 KBS 이사회가 그대로 할 거냐 이 논의도 해야 되는 거고요. 회계분리를 했을 때 어떻게, 지금처럼 세 가지를 다 할 거냐, 상업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산적합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논의가 매듭되지 않으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전반적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걸로 논의를 모아 가고, 공영방송에 필요하냐 안하냐의 문제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법체계상 헌법과 법률이 존중하는 공영방송의 존재, 국가기간방송, 재난방송으로서의 공영방송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부효율부라는 것도 만들어서 대대적인 정부효율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KBS가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있어서도 의문이 있지만 정말 보지도 않는 국민에게서까지 수신료를 받아서…… 시청률이 지금 몇 % 나옵니까? KBS, MBC 다 합쳐서 10%도 안 나오는데 그런 공영방송을 위해서, 잘 보지도 않는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일괄 징수해서 KBS의 철밥통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스스로 쇄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쇄신의 기회로 삼아서 KBS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차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그 부작용도 보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법 개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박충권 위원 수신료 얘기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신 거고요.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해민 위원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목적에 지금 충실해서 법안을 보면 좋겠어요.

모든 수상기 보유자는 수신료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100%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수상기 보유자가 수신료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면 지금 방법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분리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체납자라는,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체납자라는 문제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19페이지의 미납 현황을 보면, 2024년 5월을 보면 그전에 비해서 쭉쭉쭉 뛰는데 여기에는 지난번 제가 상임위에서 보여 드렸듯이 실질적인 인터뷰를 해 본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법안처럼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법안을 제가 다 꼼꼼히 살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100%를 가는 그런

노력을 하되 110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도 고지를 받고 여기서도 고지를 받고 한쪽에서는 그냥 모른 채 내고 내가 또 낼 수 있지 않도록, 110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같이 담겼으면 하는 그 의견만 담아서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충분히 여야 위원들 모두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법적 안정성을 얘기합니다만 이 역시 구성원들이나 EBS 입장을 봐서도 빠르게, 또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받는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질 좋은 공영방송의 콘텐츠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수신료가 이렇게 떨어져서, 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00억 떨어지고…… 지금 3대 수입원이 수신료, 지상파 광고 그리고 재송신료 포함한 콘텐츠 비용인데 지상파 광고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재송신료, 재송신료도 녹록하지가 않아요, 콘텐츠 수입의 대부분이 재송신료인데. 그런데 거기에 수신료가 1000억 떨어지고 여기에 또 한 이삼백 명의 인력이 붙어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사장이 좋은 안 좋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KBS를 위해서 경영이 이렇게 악화될 경우에 그 피해는 전부 국민들한테 콘텐츠로 온다고 보거든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없고 그냥 급급하게 프로그램 만들고 아니면 구매프로라든가 외주프로 갖다가 때우고 편성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공영방송의 모든 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1000억 이상의 적자가 계속 유지될 경우 KBS는 경영이 콘텐츠로 이어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분리징수, 통합징수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통합징수가 훨씬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은데 왜 분리징수를 굳이 계속 강행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나 KBS를 위해서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부분을, 아까 시행 후 6개월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정리해서 법안을 다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KBS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도 방송계에서, 또 우리 이전 선배 세대 때부터 시청률의 흐름을 들은 것까지 종합하면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에 한때 30%에 육박하는 일일 시청률을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10%도 안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채널들 가운데 일일 시청률 1위는 늘 KBS입니다. 우리 주변에 KBS 안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지요? 왜 그러냐? 나이 드신 분들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들은 공영방송을 보십니다. 그분들이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를 우리 국민이, 우리 공동체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 KBS의 중요한 기능 중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

가, 그걸 위해서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를 잘 안 걷히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 가면 그 어르신들이 보는, 갈수록 고령화 사회, 더 고령화가 진행될 텐데 지금 현재로도 압도적인 70대 이상이 KBS를 보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질 낮은 콘텐츠를 제공해도 된다는 그렇게 오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수신료가 없어져야 마땅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유지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KBS 재원이 1년에 500억, 1000억 깎아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국회라도 나서서 막아 주지 않으면 KBS 망가진 다음에 그 피해가 KBS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특히나 우리 고령층들에 다 넘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이게 법에까지 규정하는 것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 죽 유지해 왔지만 이런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저도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라고 한다면 공영방송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방송에서 시청률 안 나온다고 해서 공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상황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합징수가 현재 분리징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리징수의 합목적성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의 경우에 분리징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관리비에서 통합 정산돼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수신료를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분리징수로 인한 합목적성이 크게 떨어진다. 공공주택, 아파트 주민들은 그대로 다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당초의 목적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그다음에 분리징수의 합목적성을 따져 봤을 때도 통합징수 쪽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확인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전체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2665만 대가……

○소위원장 김현 2665만이면, 그러면 분리징수를 하고 있는 가구 수는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1587만 대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1587만 대. 가구입니까, 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대수 기준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몇 %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59.5%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분리징수로 해서 납부하는 가구가 50%고?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통합징수도 50%라는 얘기네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통합징수보다는 사실은 이게 아파트……

○ 소위원장 김현 통합징수지요. 통합징수인 겁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아파트 부분……

○ 소위원장 김현 2500원을 관리비 영수증 안에 그대로 똑같은, 기존에 제가 말씀, 그러니까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되는 게 50%, 분리징수로 들어오는 게 50% 이렇다는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아니요, 분리징수하고 있는 게 59.5%고요.

○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수익은 몇 %입니까? 90%잖아요. 그러면 분리징수로 하는 가구는 납부율이 낮은 거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45%는 납부율이 거의 99%, 100%에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해민 위원이 얘기했던 100%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법의 정신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분리징수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방통위는 돈이 덜 걷히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법의 정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가는 특별부담금이 됐든 세금이 됐든 준조세가 됐든 간에 법의 정신에 맞춰서 조세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거고 또 국민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맞잖아요. 범법자를 양산시키는 게 국가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특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정부가 나서서 범법자를 양산합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 소위원장 김현 그건 면제지요. 납부의 의무, 그것 지금 얘기하는 게 TV 수상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 TV 수신료를 내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한전이든 KBS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지 방통위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방통위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방통위는 이렇게 돈을 많이 걷어 주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법을 지키는 것, 방통위가 국가기관이에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법을, 지금 이게 수신료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라는 게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소위원장 김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타난, 45%와 55%인데 45%는 100%가 되고 55%는 예를 들어서 70%밖에 안 된다면 100% 부담금을 의무 부과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로 들려요, 말씀의 취지는 그런 겁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런 것보다는요……

○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냐고요. 그러면 아닌 거지요? 특별부담금을 내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는 건 당연한 거지요.

○ 소위원장 김현 예,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는 건 당연한데 그걸 내기 쉽게, 편하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의무를 지고 있는 영역에서 그걸 내게 하면서……

○**소위원장 김현** 그게 몇 % 되지요?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지금 통합징수라는 것 자체가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현**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추후에 그게 몇 %가 되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리징수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리징수가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의 자율성 그리고 수상기가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상기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신료를 견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무서워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 부분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까지 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저희가 제시합니다.

○**박충권 위원**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찬반 의견이 분명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지 결론 내리시지요.

○**소위원장 김현** 결론은 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김장겸 위원** 부위원장님, 이게 BBC나 NHK도 전기세하고 결합해서 강제징수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다 직접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위원장 김현** 영국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뭐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할 수는 없겠지요. 동일할 수는 없겠는데……

○**김장겸 위원** 그러게요.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아무 관련이 없는 전기세에 붙여 가지고 그걸 시행령도 아니고 법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런 나라가, 사례가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역시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분리하는 게 맞고 또 원칙적으로 하려면 한전에서 분리해서 고지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하려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징수를 하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되고 있는 거고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수정문구를 만들었는데 좀 깔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현 예. 자구 정리예요.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된 내용대로 법률안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법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과기부 소관 법률이므로 과기부2차관 착석해 주셨고요.

2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의사일정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8조의3 제1항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소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되 자료 중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면 비고에 올해 8월 현재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표로 정리했고 대기업 자회사 합계는 51.8%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16쪽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 관련 등록조건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3사 계열회사들의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 수의 총합이 전체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 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다시 8쪽을 보시면 안 제38조의3제2항은 재판매 사업자 중 대기업 계열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려는 것으로, 지난 소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개정안대로 의결할 경우 계열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도록 하여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 수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소위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과기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지금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통사 자회사 지배력에 대한 제한 문제, 동의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60%의 제한을 법률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안으로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은 알뜰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이통사 자회사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법체계에서 50% 범위 내에서 처리하되 기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거기에 대한 차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법체계에서 더욱 맞아 보이고 실제로 이통 자회사를 제한하되 기타 알뜰폰 시장의 경쟁을 높여서 전체적인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급히 대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이게 지난번 논의 이후에 살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가운데 95%가 알뜰폰이더라고요. 알뜰폰 업체의 보안능력이 굉장히 허술한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도 알뜰폰 업체, 소위 대기업이 아닌 쪽에서 수집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의문스럽고. 이게 대포폰이 적발된 8만 6000건 가운데 95%가 알뜰폰이면 중소업체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60%로 딱 못 박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 말씀하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 이상휘입니다.

이것 4페이지에 보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한다’, 이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점유율을 60%로 제한한다는 게 법적으로 들어가도…… 이전 사례가 있습니까,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 퍼센티지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방송법에는 유료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있었다가 일몰이 되어서 새롭게 제한이 되지는 않았고요. 또 주세법 같은 데도 있기는 있었으나 지금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는 법적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게 왜냐하면 규제다, 규제가 아니다를 떠나서 법적인 용어, 법 내용에 6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법률에 그런 숫자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이게 어쩌면 대기업들이라든가 좀 유력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요. 그러면 규제를 60%하고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시장경제 차원에서 보면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런 문제를 공정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진입규제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알뜰폰 시장에서 그 특수성이 있어서 대기업 전체로 해서 60%로 할 건지, 이통 자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매대가를 자기가 정하는 기관이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통 자회사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규제가 없다 그러면 알뜰폰 시장도 대기업들이 다 먹어 버릴 수 있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 법 취지에는 제가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통 3사가 알뜰폰을 다 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도 지금 이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은행도 자사의 어떤 영업적 차원에서도 어플 쉽게 깔고, 앱 쉽게 깔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전체적인 원칙에서는 위반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도 이게 상충이 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것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도. 그런데 이게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통신시장 전체로 보면 신규 진입을 늘려서 경쟁을 촉진해야 되는,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게 사실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알뜰폰 시장을 바라보니 국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통 자회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통 자회사는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통 자회사 아닌 기업들의 진입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이 있습니다, 법체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지금 진입이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유통이나 나머지도 들어와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통신 전체의 경쟁 측면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대기업과 현재 있는 중소업체로 바라볼 거냐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한민수입니다.

과기부 대안이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은 제한하고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차등화된 등록조건을 부가한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에 있어서는 약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더 낮은 가격으로 대기업이, 금융기관인 경

우에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90% 한도를 등록요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현재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지금 저희가 보니까 5년 동안 40만 정도 가입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차등되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율이, 대기업 이통 자회사들이 들어오니까 좀 더 엄하게 부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래서 이통 자회사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통 자회사에 대해서 등록요건으로 50%를 잡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를 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법 취지가 지금 보면 아무리 법체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자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통 자회사에 대해서는 50%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한번 두고 대응을 해 보자 이렇게……

○한민수 위원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은 제한을 50%로 두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수치로는 50%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50% 이내, 아까 이상휘 위원님의 주셨던 것처럼 법체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하겠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도 이번 이 법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기업, 특히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MVNO 자회사의 놀이터가 됐어요, 알뜰폰 시장이. 국정감사 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우리 과방위 전체위까지 통과됐지요, 단통법이 폐지됐고. 이 대안이 실행되면 보조금 경쟁이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건데 이것은 또 알뜰폰 시장에 충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적절하고 저는…… 아니, 자회사 여기 50% 하는데 전체 60%로 제안된 이번 법안들 여러 수치를 죽 공부를 해 보면 상당히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동의한다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일단 지금 여기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기업은 우리 통신, SKT, KT, LG유플러스만 의미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그 표현을 통신 대기업이라고 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4쪽에 보시면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표가 있는데 여기에 SK, KT, LG유플러스, 여기는 통신사 자회사 부분 점유율이고요. 그 밑에 KB, 그 밖에 에스원 등 이런 것들이 대기업 자회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규제 대상은 통신이 아닌 일반 대기업도 포함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가 낸 안 중에 보면 2항·3항은 통신사 자회사에 대해서 50% 제한, 지금도 등록조건에 있지만 이걸 법에 50%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거고 4항 부분이 이통 자회사가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 자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 6조 2항이 통신사업자들 등록 관련 조항인데 여기에 등록 시 조건을 붙여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대기업 자회사들은 규제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종면 위원** 우리 전반적인 법률체계를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통신 부분만 특별히 더 따로 규제를 해야 되나 이 의문에서 출발을 해 보면 통신사업 영역 자체가 이미 독과점이잖아요, 3개 통신사가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한 다른 사업자들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기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위헌 사례로 되어 있는 신문법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 대입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개념이 통신 대기업과 일반 대기업은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이 의견을 내고……

○**소위원장 김현** 통신 대기업으로 하자는……

○**노종면 위원** 예, 저는…… 지금 과기부에서 그 개념을 분리해서 접근해 보자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갈래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합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을 이해하면서.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저도 지금 사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받아 보고 싶었던 자료가 15페이지에 드디어 와서 이걸 보다가, 제가 알기로는 SKT나 KT나 LG유플러스나 모두 다 지금 알뜰폰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수익은.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수익도 없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 이것을 유지하려고 할까 하고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통사 대기업을 제외한 곳에서, 나중에 본인들이 다 마켓셰어를 차지하고 다른 곳에서 이제는 다 물러나게 되는 어떤 시점이 되면 그때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익을 위해서. 그 걱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수익도 안 나오고,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SKT나 KT나 LG유플러스나 기업의 다른 서비스하고 엮어서 수익을 내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것은 경쟁 측면에서 위낙에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알뜰폰 시장 자체가 교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이것 데이터를 보자마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곳이 SKT, KT, LG유플러스예요. 즉 이통 자회사, 방금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통신 대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 중에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안에. 이 법안의 취지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 이것은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어느 쪽에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통 자회사, 즉 노중면 위원님 표현으로는 통신 대기업에 대한 점유율 제한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과기부 측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핵심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멈춰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총괄, 통틀어서 대기업으로 60%를 제한하게 되면 분명히 그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대기업 이통사들의 경쟁이 확 일어나 가지고 시장마켓을 점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멈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해외의 큰 IT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로 여기 보면 KB은행이나 추후에 우리은행도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일괄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 자회사들만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걸로 두고 좀 자유롭게 다른 기업들, 왜냐하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려면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경쟁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기부 측 입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지금 이 알뜰폰 정책이 가계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과기부도 그렇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후속 조치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아까 다들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통신 3사하고 그 계열사만 규제하고 나머지 대기업은 분리하는 것, 저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일 것 같고, 거기에 찬성하고 이 법안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저도 지금 이통 자회사, 대기업을 뮤지 말고, 그 부분 많은 위원님들하고 강 차관님 말씀하시는 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희 위원 저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차관님, 이게 알뜰폰이 결국 소비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 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좀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소비자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개정안대로 하면 그게 소비자한테 더 유리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 자체의 취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6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 나머지도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현재가 51% 정도, 한 8% 정도까지만 여지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자본력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특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주셨지만, 법체계가 조금은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법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50%는 자회사를 한번 법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는 강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60%가 되면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해서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통 자회사들이 더욱더 단기간에 법 시행 전까지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 나머지 진입 근거는 점점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통 자회사는 위원님들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먼저 제한을, 법체계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놔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법체계를 조금만 유연하게, 저희가 검토했던 대로 등록요건이나 부가조건에 대한 문제가 정부에 지나친 위임의 범위가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는지는 좀 검토해 봄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우선 해 봄야 되겠다 이렇게, 김현 의원님 제안해 주셨던 취지와 내용을 살려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새로운 자본력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자본력이 몇 %의 자본잠식률을 갖고 올 수 있나요? 새로운 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미지의 세계로 놓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3사가 있고 그 여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몇 %인데…… 법이라는 것은 보완해 나가고 또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막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그 양산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알뜰폰 시장 분들이 뭔가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에도 그렇고 정치권에도 그렇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이해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왜냐하면 그동안 단통법을 폐지한다라는 선언적인 것만 있었지 정부에서 그 어떤 노력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고 나서 22대가 시작돼 가지고……

그러면 정부는 과연 단통법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가 뭐가 있었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잘할 테니 믿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알뜰폰 시장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우리 이러다가 궤멸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자본이, 만약에 60%로 잠정적으로 해 놓고…… 그럴 경우는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단통법도 2014년도에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가져왔지만 법의 내용과 형식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우려하기에 새로운 자본력이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통 자회사의 지배력 구조부터 우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법 취지의 건의사항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 자회사를 우선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그다음에 알뜰폰 시장은 사실은 저희 정부가 바라보기에 거의 유일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여지는 남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감 때 준비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알뜰폰에 대한 대책도 곧 12월 내에 발표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알뜰폰 시장, 대기업과 자회사의 놀이터가 돼 버렸지요. 확실하게 건전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강소 알뜰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좀 더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시행할 경우에 중소 독립계 알뜰폰 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 확실한 실익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분들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해태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알뜰폰 시장 자체는 이통사와 이통사의 자회사의 구조로 지금 정착돼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권이 현재 들어와 있지만 40만에 5년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매대가 문제는 강력하게 저희가 인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인하를 시키고 나서 경쟁을 시키는데 아직 우리나라 중소 알뜰폰,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52개 기관이, 기업이 자기의 상품을 직접 설계해서 자신의 빌린 망을 가지고 하는 제대로 된 알뜰폰을 만들 수는, 알뜰폰 서비스를 하지는 못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제일 큽니다.

전체 숫자가 52개지만 그분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시장경쟁을 또 활성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턱없이 어렵습니다. 영세합니다. 그것보다는 도매대가를 일단 정리해 두고 더 이상 자회사가 지배력을 구조하지 못하게 일단은 막아 놓은 상태에서 새롭게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매대 가의 수준은 올해 내에 더 확실하게 좀 줄여 나가는 것을 지배사업자랑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중소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도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더 모색하고 또 부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중소업체를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경쟁력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살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자회사들이 지나치게 점유율을 높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 필요하고 저도 이 법에 동의하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들도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가하는 것도 좀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 이정현 위원님은 찬성하는 거고요. 이훈기 위원님 찬성하는 거고 이해민 위원의 입장은 정확히 뭘로 이해해야 되나요? 법에 찬성하는데…… 정부 의견에 찬성하는 겁니까?

○이해민 위원 지금 저는 정부 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렇게 되면 표결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중면 위원이 나갔어요.

일단은 현재 상황 보류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으로 가면 알뜰폰 시장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표결은 안 하지만 계속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은 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장겸 김현 노종면 박충권 이상휘 이정현 이해민 이훈기 한민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통신정책관 이도규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